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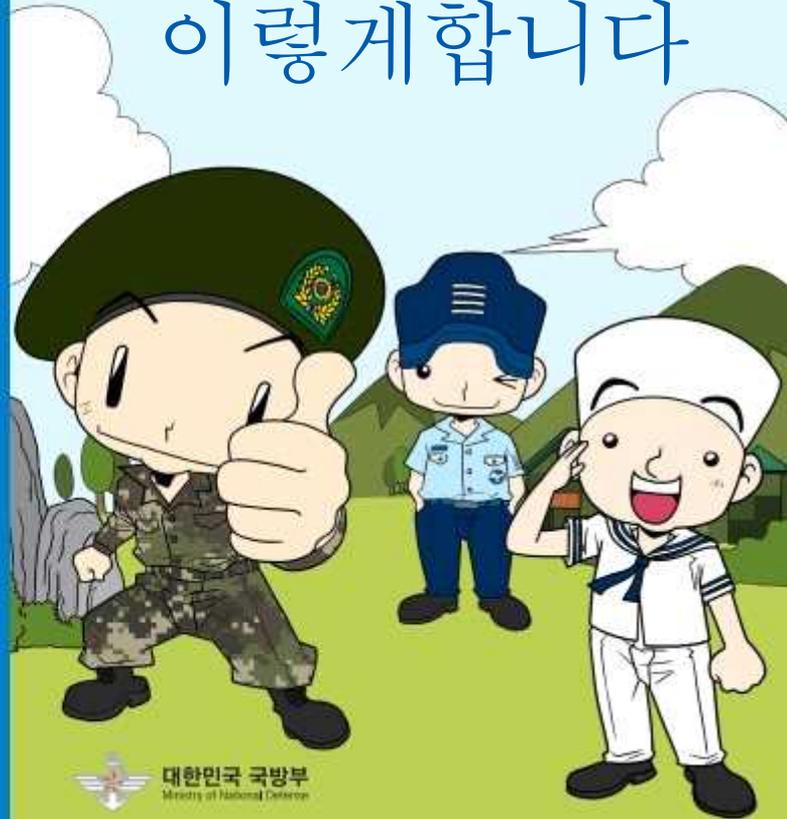
예비군복무는
이렇게합니다

Question
and Answer



2020년 예비군 복무 길라잡이

예비군복무는 이렇게합니다



예비군복무는어떻게합니다

CONTENTS

예비군 복무 소개(웹툰) 04

예비군 복무 개요

예비군이 왜 중요한가요? 12

현역복무가 종료되면 병역의무가 끝나는 건가요? 13

예비군 편성은 어떤 절차로 되나요? 14

전시(비상시) 예비군 복무

병력동원소집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통지하나요? 15

동원령이 선포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16

예비군동원과 총동원(부분동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17

평시 예비군 복무

예비군은 연차별로 어떤 훈련을 받나요? 18

동원훈련과 일반훈련은 어떻게 다른가요? 19

예비군훈련 입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21

예비군 편의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22

예비군훈련 보상비는 어떻게 되나요? 23

예비군훈련 불참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4

예비군훈련 보류가 무엇인가요? 25

예비군훈련의 궁극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26

예비군훈련 소집필증 분실시 재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27

예비군훈련 및 복무제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28

기 타

예비군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29

병적증명서로 군 운전경력 확인을 할 수 있나요? 30

병력동원훈련,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휴대폰 등 모바일로 받을 수 없나요? 30

군복을 판매나 구매해도 되나요? 31



현역복무가 종료되면 병역의무가 끝나는 건가요?



현역복무를 마쳤다고 해서
병역의무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의무는 만 40세까지이며,
병으로 전역한 경우는
전역 후 8년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예비군 편성은 어떤 절차로 되나요?

예비군부대는 지역별, 직장별로 편성됩니다.
지역예비군은 읍·면·동 단위의 행정구역 단위로 편성되어
지역방위 업무를 수행하고, 직장예비군은 대학교나 공공기관
등 직장 단위로 편성되어 직장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부대를 꼭 확인하고
훈련에 참여해야겠죠?



지역예비군
(읍·면·동·시·군·구)

직장예비군
(기업, 대학,
국가기관 및
중요시설)

동원령이 선포되면 어떻게 행동 해야 하나요?



병무청에서 사전 교부한 병력동원 소집통지서나 연초 소집부대에서 발송한 지휘서신을 확인하여 지정된 일시와 장소로 예비근부를 착용 후 도착하면 됩니다.



예비군은 연차별로 어떤 훈련을 받나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지만
보편적으로 예비군 1~4년차는
동원훈련 2박 3일이나
동미참훈련(2박 3일 또는 32시간)이며
5~6년차는 기본훈련(8시간)
작계훈련(12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동원훈련과 일반훈련은 어떻게 다른가요?



동원훈련은 현역부대에 입영하여 전시 임무수행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이며 일반훈련에는 지역방위 목적의 기본훈련, 작계훈련, 동미참훈련이 있습니다.

동원훈련



개별·작계·동미참훈련

우리지역은
우리가 지킨다!



예비군 편의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예비군의 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야~
너가 원하는 나에게
훈련 받을 수 있어서
들구만!



인터넷으로 훈련일정 선택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 공지된 훈련일정을 확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훈련일정으로 선택하는 제도

전국단위 예비군훈련

예비군의 실제 생활권역 LHO에 있는 전국의 예비군훈련장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

휴일 예비군훈련

생활활동 보장 등을 위해 휴일에 본인이 신청한 훈련장에서 예비군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예비군훈련 불참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정으로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전에 훈련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적당한 사유없이 불참하게 되면 관례법에 따라 징역 또는 불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동원훈련 무단 불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 일반훈련 무단 불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예비군훈련 및 복무제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화문의

국방부 : 국번없이 1577-9090
병무청 : 국번없이 1588-9090

홈페이지

www.yebigunt1.mil.kr
www.mma.go.kr

모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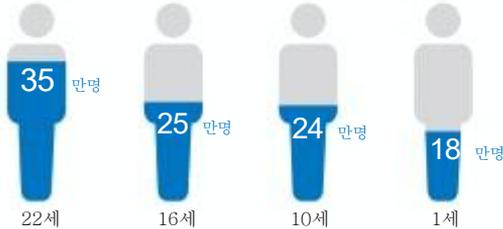
앱스토어 및 플레이스토어에서
"예비군" 및 "병역안내" 검색 후 설치

Q 예비군이 왜 중요한가요?



A 우리나라는 저출산(1.01명)으로 병역자원이 감소되어 예비군에 의한 전력보장이 중요합니다.

[연령별 남성인구] '19년 6월 기준



20년 후에는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할 남성인구가 현재보다 약 17만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성인구 감소는 병역자원 감소로 직결되며 이로 인해 상비군의 감축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상비군의 부족한 전력을 예비군으로 보강해야 하므로 예비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Q 현역복무가 종료되면 병역의무가 끝나는 건가요?



A 우리나라의 병역 종류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으로 5개입니다.

				예비군편성	~40세
병역준비역 (~35세)	병역판정검사	1~3급	현역	예비역 /복무 마친 보충역	병 :전역 후 8년차까지 (이후 추가편성)
		4급	보충역		
		5급	전시 근로역		

우리나라 남성들의 병역의무 이행과정을 살펴보면, 18세에 병역준비역이 되며,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이후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일정기간 복무를 마치면 예비군에 편성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역 복무를 마칠 때 소속부대 지휘관님께 신고하는 것을 전역신고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병역의 종류가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현역복무를 마쳤다고 해서 병역의무를 모두 마친 것은 아닙니다. 병역의무는 만 40세까지이며, 병으로 전역한 경우는 전역 후 8년차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복무하게 됩니다.

Q 예비군 편성은 어떤 절차로 되나요?



A 예비군부대는 지역과 직장별로 편성하며 예비군을 관리하고 훈련을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방부장관



지역예비군 부대는 읍·면·동 단위의 행정구역 단위로 편성되어 지역방위 임무를 수행하며 직장예비군 부대는 대학교나 공공기관 등 직장 단위로 편성되어 직장방호 임무를 수행합니다.

지역예비군의 경우에는 주소지가 변동되면 자동으로 이전된 주소지의 예비군 부대로 편성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Q 병력동원소집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통지하나요?



A 병력동원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군 작전을 위해 동원지정된 예비군을 소집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동원될 부대를 평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병무청에서 본인이 수신 동의한 E-mail, 모바일 앱 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교부하는데 총동원, 부분동원, 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3종류가 있으며 각각 색상이 상이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집 통지서 혼동하지 마세요!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분홍색)총동원령 선포시 사용
 병력동원(부분동원)소집 통지서 (흰색) 부분동원령 선포시 사용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파란색) 평시 동원훈련시 사용

(전시 등 휴지지를 대비한)				입영구분
No.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개별입영 차량수송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계 급	병과(주특기)		군번	
입영부대			소집중대	
입영일시	동원령 선포일의 다음 날부터 일째 되는 날 시부터 시까			
모이는 장소				
도착지				
유효기간	위의 입영부대 동원지정 해제 시까지			
「병역법」 제 46조에 따라 위 부대에 입영할 것을 통지합니다.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이 통지서는 입영시 병무관계관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뒤쪽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Q 동원령이 선포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A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동원령이 선포되면 예비군들은 병무청에서 사전교부한병력동원소집통지서나연초소집부대에서발송한지휘서신을 확인하여 지정된 일사와 장소로 예비군복을 착용 후 입영하면 됩니다.

[입영일시 계산방법]

동원령 (부분동원령) 선포 : 3월 1일 10:00부

입영시간

구분	소집통지서 입영일시	부대 입영일시
총동원	M+ 1일 14:00	3월 2일 14:00
부분동원	PM+ 20시간	3월 2일 06:00

*M :Mobilization (총동원), PM :Partial Mobilization (부분동원)

*집결지(모이는 장소)에 도착하는 시간은 소집통지서 참조

총동원령이 3월 1일 10:00에 선포되었을 경우, 소집통지서에 동원령 선포일의 다음날로 1일째 되는 날 13시부터 14까지로 표기되어 있다면, 3월 2일 오후 2시까지 소집부대에 도착해야 됩니다. (동원령 선포 다음날 14:00도착)

부분동원령이 3월 1일 10:00에 선포되었을 경우, 소집통지서에 부분동원령이 선포된 시간부터 20시간이내 까지로 표기되어 있다면, 선포시간부터 20시간이 경과한 3월 2일 06:00까지 소집부대에 도착해야 됩니다.

(부분동원 선포시간 기준 20시간까지 도착)

Q 예비군동원과 총동원(부분동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예비군동원은 적 또는 무장공비의 소멸과 중요시설 등을 경계하기 위해 예비군법에 근거하여 지역단위로 예비군을 동원하는 제도이며, 총동원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 군부대 중·창설 및 손실보충에 소요되는 인원을 병역법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동원 지정된 예비군을 소집하는 제도입니다.

[예비군동원]

발령권자 :국방부장관 (수임군부대장 위임 가능)

대상 :예비군동원 선포지역 내 모든 예비군 (행정구역단위)

임무 :주요시설, 병참선 등 방호

지역별 집결시간

- 예비군동원 발령지역 /인접 시·군·구 :6시간 이내
- 상가지역 외의 육상 지역 :24시간 이내
- 섬 지역에 있거나, 어선 승선자 :48시간 이내

[총동원]

발령권자 :대통령

대상 :동원지정예비군 (통상 1~4년차 예비군)

임무 :군부대로 입영하여 군사작전 수행

[부분동원]

발령권자 :대통령

대상

:부분동원지정예비군(통상1~4년차예비군,국지전이나전쟁초기긴요부대)

임무 :소집부대로 입영하여 군사작전 수행(예비군 복무는 이렇게 합니다 17)

Q 예비군 연차별로 어떤 훈련을 받나요?



A 전역 후 예비군훈련 진행은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나 보편적인 훈련진행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군동원]

구 분	예비군연차	예비군훈련
	0년차 (전역당해년도)	없음
	1년차	동원훈련 (2박 3일)
	2년차	또는 동미참 (2박 3일 또는 32시간)
	3년차	* 간부예비군 : 6년차까지 동원훈련
	4년차	
	5년차	기본훈련 (8시간)
	6년차	작계훈련 (12시간)
	7년차	없음
2028년	8년차	

[훈련보류자의 경우]

- 학생예비군의 경우 예비군복무 연차에 관계없이 매년 기본훈련 (동원보충대대훈련) 8시간을 시행합니다.
- 기타 보류자의 경우에는 대상별 상이하게 적용되며 세부사항은 25 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Q 동원훈련과 일반훈련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동원훈련
동원훈련은 병력동원훈련소집이라고 하며, 현역부대에 입영하여 전시 임무수행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입니다.

[훈련대상]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등 간부 예비군 : 6년차까지
병 예비군 : 4년차까지

[동원훈련 진행]

군부대에 입영하여 2박 3일간 실시되며, 훈련장소는 동원지정된 부대 주둔지나 소속부대의 동원훈련장에서 실시됩니다. 이때 원거리 소집부대 가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입영인원 수 등을 고려해서 병무청에서 단체수송하게 됩니다. 부득이, 원거리 소집부대에서 훈련을 받는 이유는 지역별 거주인원과 군 동원소요가 일치하지 않는데 기인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경기북부 지역은 소집부대는 많고 거주하고 있는 예비군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별 거주인원의 편차로 인해 부득이 타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 중 일부를 소집하여 부대단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한번 동원지정 된 부대는 전시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주소지 이전 부 특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동원훈련과 일반훈련 통지서를 동시에 수령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읍·면 또는 직장의 예비군부대나 인근 병무청에 문의하되, 답변이 제한될 경우 동원훈련에 우선 응소해야 하며, 해외여행 및 유학 중인 사람은 별도의 연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방병무청에서 자동으로 동원훈련을 연기 처리합니다.

Q 동원훈련과 일반훈련은 어떻게 다른가요? (계속)



A 일반훈련

일반훈련에는 지역방위 목적의 기본훈련, 작계훈련, 동미참훈련이 있습니다.

[기본훈련 :지역방위 작전의 필수 전투기술훈련]

- 대상 :예비군 5~6년차 병, 대학생예비군, 예비군훈련 일부 보류자
- 시간 :8시간 훈련

[동미참훈련 :동원훈련 미 참가자 또는 동원 미지정자 훈련]

- 대상 :예비군 중에서 동원 미 지정자 또는 동원훈련 미 참가자
- 시간 :장교 및 부사관, 공군의 병 :2박 3일간 입영
육군 및 해군의 병 :4일간 출퇴근 (32시간)

[작계훈련 :거주지·직장의 방어훈련]

- 대상 :병 예비군 5~6년차
- 시간 :전·후반기 각 1회, 6시간씩 훈련

Q 예비군훈련 입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예비군훈련 입소시간은 각군별, 훈련별 다양합니다.

구분		
동원훈련	육군·제주도 지역 :12시	17시
동미참훈련(입영)	해군·공군 :13시	
일반훈련	동미참·기본훈련	9시 ~ 18시
	작계훈련	별도 통제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 중 입영훈련의 퇴소시간은 소집부대(훈련부대)에서 최초 집결지 간 거리를 고려하여 100Km(2시간) 이상은 1~2시간 조기 퇴소 가능

[동원훈련·동미참훈련(입영) 입소시간]

육군·제주도 지역 12:00, 해군·공군 13:00

[일반훈련 입소시간]

훈련당일 09:00 (전군공통)

입소시간 이후에 도착할 경우 훈련을 받을 수 없거나, 개인별 불이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입소시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예비군훈련에 입소할 때에는 예비군복과 군화 등 지정된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고, 신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Q 예비군 편의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현재 예비군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에는 인터넷에 의한 훈련 일정 선택과 전국단위 예비군훈련, 휴일 예비군훈련 제도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의한 훈련일정 선택]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 공시된 훈련일정을 확인 후 **본인이 원하는 훈련일정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동원훈련, 작계훈련, 동미참훈련 중 **입영훈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국단위 예비군훈련]

예비군의 실제 생활권역내에 있는 전국의 모든 예비군훈련장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동원훈련, 작계훈련, 동미참훈련 중 **입영훈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예비군훈련]

예비군 생업활동 보장 등을 위해 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동원훈련, 작계훈련, 동미참훈련 중 **입영훈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바일 앱 활용]

예비군훈련에 대한 훈련정보, 훈련일정 및 연기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앱입니다.

*앱 스토어 및 play 스토어에서 '예비군'으로 검색 후 설치



Q 예비군훈련 보상비는 어떻게 되나요?



A 동원훈련 또는 일반훈련에 참가하게 되면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비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동원훈련 (동미참 입영훈련 포함) 참가시]

입소시 : 입소여비, 식비
*30Km 이내, 개별 입영자 **퇴소시** **퇴소여비** (따라 상이)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이동거리에 따라 여비가 다르게 지급**되고, 통합버스로 동원훈련 입·퇴소한 경우에는 여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반훈련 참가시]

동미참·기분훈련 : 교통비
*교통비는 1일 단위로 지급되며, 급식은 중식(1끼)이 제공됨

[급식 지원]

일일 6시간 이상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급식을 지원하며 급식지원이 불가할 경우 급식비로 정산하여 지급
*동원훈련의 경우에 현역 장병 급식지원지침을 적용함

[예비군 부상자 보상지원]

예비군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입·퇴소 포함)에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 지원

***각 군에서 치료비 및 휴업보상금 등 지급여부 결정**

관련서류 접수 및 보상절차 문의 : 훈련부대
단, 동원훈련 입소시 발생한 부상에 대한 보상절차 문의 : 지방병무청

Q 예비군훈련 불참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A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우편이나 E-mail 또는 모바일 앱으로 받은 후에 입원, 관혼상제 등 개인 사정이 발생하여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전에 훈련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동원훈련 연기신청]

지방병무청으로 **입영일 5일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FAX,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연기신청

[일반훈련 연기신청]

소속 예비군중대에 **소집일 전일까지** 예비군 홈페이지 (www.yebigun1.mil.kr),

FAX,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연기신청

동원훈련 및 일반훈련 모두 갑작스런 연기 사유 발생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시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후 3일 이내 연기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게 되면 관련 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	연기원서 제출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경우 고발 고발 후 재소집 또는 동미참 훈련 부과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2차 보충훈련 무단 불참시 고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Q 예비군훈련 보류가 무엇인가요?



A 예비군훈련 보류는 국가기능 유지와 사회공익을 위해 경찰관, 대학교 재학생이나 국외 출국자 등 **특정한 직업이나 사유가 있는 예비군에게 훈련을 면제 또는 축소시켜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류대상(예)]

(총 56개 직종)

보류대상	훈련시간
대학교 재학생	기본훈련 8시간
국외체류 (365일 이상)	국외체류기간 훈련면제
각급학교 교사	기본훈련 8시간
직업훈련원생	기본훈련 8시간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3, 별표4 참조

대학교 재학생(사이버·방송통신·학점은행제 등 제외)은 학업보장을 위해 기본훈련 8시간만 부과하게 되며, 국외에 365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출국기간 중 훈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외 체류기간 중에 부과된 예비군훈련이 면제됩니다. 단, 일시 귀국하여 국내 체류일이 15일(출국일 및 귀국당일 제외)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에 따른 훈련이 부과됩니다.

보류직종에 속해 있는 예비군은 소속 예비군부대에 보류 대상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보류원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휴학·이직 등으로 보류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보류해소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해 고발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Q 예비군훈련의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 일반훈련 관련사항은 소속된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로 문의 하면 됩니다.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훈련진행과 관련된 것은 군부대, 통지사나 훈련의 연기 등과 관련된 것은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구분	군 및 예비군부대	지방병무청
	훈련진행 급식 등 복지 퇴소여비 지급/귀가 수송	통지사 교부 민원처리 (연기 등) 기피자 고발 입영 수송/입소 여비지급
	통지사 교부 연기 처리 불참자 고발 훈련 진행 훈련장 시설관리 입·퇴소 여비 및 증식비	없음
민원신청	국방부 홈페이지 www.mnd.go.kr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Q 예비군훈련 소집필증 분실시 재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A 동원훈련

동원훈련을 이수한 예비군에게는 소집부대에서 퇴소 시 교육훈련소집필증을

교부하여드리고있으며분실하였을경우는소집부대또는해당지방병무청에 재발급을 요청하면, 확인 후 「**훈련소집 입영확인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병무청홈페이지에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출력방법

- 01 병무청홈페이지 (www.mma.go.kr)
- 02 병무민원포털
- 03 동원·예비군 클릭
- 04 병력동원훈련소집입영 확인서 출력



일반훈련

일반훈련을 이수한 예비군에게는 훈련부대에서 퇴소 시 교육훈련소집필증을 교부하여 드리고 있으며 분실 또는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소속 예비군부대에 발급을 요청하면, 확인 후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 홈페이지에서도 로그인 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홈페이지 출력방법

- 01 예비군홈페이지 (www.yebigun1.mil.kr)
- 02 나의 훈련정보- 훈련정보 클릭
- 03 훈련내용에서 소집필증 클릭
- 04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필증 출력



Q 예비군훈련 및 복무제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예비군복무를 확인하는 방법은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화문의]

국방부 :국번없이 1577-9090 병무청 :국번없이 1588-9090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예비군 홈페이지 :www.yebigun1.mil.kr

1. 일반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주요 서비스

나의 정보/훈련, 훈련신청/연기/보류/해소와 전화번호 등 안내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1. 개인별 동원훈련 일정 확인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동원·예비군 동원훈련 일자/교통편 조회

2. 동원훈련 연기신청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민원안내 신청서/구비서류

「병역판정검사·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 (현역/사회복무/예비군 등 입영 및 연기)」

다목적성 통지서 관할 지방병무청에 FAX로 전송

[모바일 앱]

앱 스토어 및 play 스토어에서 “예비군” 검색 “예비군” 검색

일반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주요 서비스

나의 정보/훈련, 훈련신청/연기/보류/해소와 전화번호 등 안내

병무청 제공 앱 스토어 및 play 스토어에서 “병역안내” 검색

동원훈련일 조회/저장 :나의병역 일자조회 조회/저장

동원소집통지서 조회/저장 :보관함 동원소집통지서 조회/저장

Q 예비군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A 군부대, 예비군중대, 병무청에서 예비군 대상으로 전·평시 예비군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지휘서신 연초, 동원지정 알림, 동원훈련전/문자+전자메일 *문자발송 실패+전자메일 미 확인시 군사우편 발송
예비군중대	일반훈련소집통지서 일반등기우편, 전자메일, 훈련안내 문자, 보류해소 신고 안내문자 등
병무청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등기우편, 전자메일, 통지서 발송안내 문자

다만 예비군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잘 제공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메일 주소와 핸드폰번호가 필요하므로 개인정보 변경 시 관련 기관에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병적증명서로 군 운전경력 확인을 할 수 있나요?



A 군에서 운전특기로 복무한 전역자에게 발급되는 군 운전경력확인서는 자동차보험할인, 취업시경력인정, 사회면허갱신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는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정부24), FAX(어디서나 민원) 등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군 운전경력인정제도]

군 운전병 등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병력동원훈련,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휴대폰 등 모바일로 받을 수 있나요?



A [각종통지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8년 10월부터 앱을 통해 각종 통지서 수령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력동원훈련/병력동원소집 통지서]
병력동원훈련,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휴대폰 등 모바일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8년 10월부터 앱을 통해 각종 통지서 수령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바일 통지서 수령에 동의하시면, 「병무청 앱」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통지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Q 군복을 판매나 구매해도 되나요?



A 군복에는 모자, 군화, 계급장, 제복, 유사군복이 포함되며 군복을 아무나 구매할 수 있고 착용할 수 있다면 전시에 피아식별이 곤란해집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군복의 착용, 판매 및 구매, 국외 반출 등을 엄격히 통제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군복 착용 불법사례]

- 예비군훈련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복을 착용하고 활동
- 예비역이 복학 후 군복을 착용하고 학교에서 활동
- 방송에서 군복 임의 착용

[판매/구매 불법사례]

- 전역시 휴대한 군복을 ON-OFF 라인을 통해 판매
- 예비군훈련 종료 (병 7년차 이상) 후 군복을 ON-OFF 라인을 통해 판매
- 예비역이 체형의 변화로 군복을 ON-OFF 라인을 통해 구매

[예비군복 대여제도 안내]

대상 :복장을 갖추지 못하여 정상적인 훈련을 받기 어려운 예비군 신청
:훈련 7일 전까지 「예비군복대여신청서」 작성(소속예비군중대로 제출)

방법 :훈련 입·퇴소시 훈련장에서 대여 및 반납
[국외 반출 불법사례]

- 해외여행 시 코스프레 행사 참여를 위해 군복 휴대

군복 관련 처벌로는 불법 판매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구매 및 착용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되며 유의하기 바랍니다.